

제 842 호
1981. 6. 9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편집: 문화공보관 김 진 호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514 호 : 서울특별시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 3

제 1515 호 :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제 1516 호 : 서울특별시도시가스공급조례중개정조례 4

제 1517 호 : 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자격·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
출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6

◎ 규 칙

제 1908 호 :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운영규칙중개정규칙 6

제 1909 호 : 서울특별시구의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7

제 1910 호 :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 7

제 1911 호 :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8

제 1912 호 : 서울특별시도시가스공급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0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고 시

제 206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0
제 209 호 :	도시계획사업 (고속도로) 실시계획인가정정고시	11
제 210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3
제 211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13
제 212 호 :	도시계획사업 (지하도로) 실시계획인가	14
제 213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4
제 214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5
제 215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정정고시	15
제 216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8
제 217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인가고시	22

◎ 공 고

제 158 호 :	KS 표시정지처분공고	24
제 159 호 :	KS 표시허가취소공고	24
제 161 호 :	마포로주변구역제 1 지구제 7 획지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위한공람공고	25
제 163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26
제 164 호 :	도영구역제 12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27

◎ 사 명

조 **배**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 교육원 등의 지방공무
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1981년 6월 9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14 호

서울특별시본청, 구청, 공무원 교육원 등
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 교육원
등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가. 일반회계정원표중 7급란
'행정직 288'을 '행정직 292'로,
'토목 또는 건축직 124'를 '토목
또는 건축직 120'으로 하고, 고용원
란중 '차드사 9'를 '차드사 10'으
로 '영화기사 4'를 '영화기사 3'으
로 한다.

(별표 2)

지 방 공 무 원 정 원 표

가. 근로자회관

직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용
	5	급						
	6	급						행정직 1

(별표 2) 나. 특별회계정원표중 고용
원란 '수도기사 303'을 '수도기
수 34'로 하고, 수도기수 다음에
'수도정비공 269'를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 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1981년 6월 9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15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근로자 후생시설설치조
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직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용
7 급	1	행정직 1
8 급		
9 급	2	행정직 2
기 능 직 고 공 원	13	냉난방공 1, 청부 1, 수위 1, 목공 1, 이·미용사 2, 보조수 3, 취사부 4
합 계	17	

나. 부녀복지관

직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용
4 급		
5 급	1	행정직 1
6 급	2	행정직 2
7 급	2	행정직 2
8 급	2	행정직 2
9 급		
기 능 직 고 공 원	2	7 등급: 기계장 1, 전기장 1.
	46	전공 1, 냉난방공 1, 수위 2, 청부 4, 교도원 21, 취사부 5, 전달부 1, 민원보조원 1, 상당원 2, 타자원 1, 운전원 1, 사감 2, 사관 1, 영양사 1, 경비원 2
합 계	55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1981년 6월 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16 호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1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건설업자가 가스사업법 시행령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로서 그 공동주택의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위거 사전공사계획승인을 받아 직접 가스공급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 3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장은 제 1 항의 신청을 승인할 때에는 공사에정일과 다음 각호의 비용부담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동

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규칙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수 있다.

1. 본관 및 공급관에 대한 시설분담금: 별표 1
2. 가스사용공사의 설계수수료: 별표 2
3. 옥외배관, 가스에타기 및 옥내내관의 공사비: 재료비, 운반비, 도

로복구비, 인건비등을 합제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공사의 기준액
 4. 임시공급관설치비: 예산사적 및 지역개발미진등으로 그지역에 적정공급관을 내설하기 곤란하여 임시공급관을 개설할 때에는 그 공사비를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 8 조제 2 항중 '다음표'를 아래와 같이 한다.

가 스 사 용 료		등 구 은 료	
구	분	요	금
기본요금 (10 ㎡까지)		3,350 원	F-3 450 원
11-25 ㎡까지 (㎡ 당)		345 원	F-5 975 원
26 ㎡이상 (㎡ 당)		425 원	F-7 1,100 원
			F-10 2,270 원

제 10 조제 1 항중 '2월마다'를 '6월마다'로 한다.

(경과조치) 1981년 7월의 결산한 것에 대하여는 이조례에 의한 인상 부분의 2분의 1을 감액조정한다. 단 조정으로 1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 6월 10일로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시설분담금

설치구분	시 설	설	분	담	금
시설구분	신	설	개	조	
가스제량기 F-3 등설치		50,000 원			제조사에선 신·구제량
가스제량기 F-3 등초과설치	초과단위시간유량				기용량에 따라 차액
	㎡당 20,000 원 추가				징수

(별표 2) 설계수수료

구 분	단	속	주	택	공	동	주	택	비	고
수수료	2,000 원	/가	구	600 원	/가	구	영업소는	단속주택에	준한다.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중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1.6.1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이창갑

◎서울특별시조례 제 1517 호

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자격·고등학교 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학교 입학자격·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별표 1)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수수료징수구분표

구	분	수 수 료
고시로		2,000 원
성적증명서		200 원
과목합격증명서		200 원
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제교부		200 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1981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규칙 제 1908 호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 조 제 2 항 중 별표 4 '신규위촉시의 경력환산기준'의 제 3 호 및 제 4 호를 제 4 호 및 제 5 호로 하고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복무경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 9 조의 별표 6 에 준함) : 100 %

제 13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3 조 (해외연수) ①관장은 예술단체의 기량향상과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원에게 2년이내의 유급해외연수를 승인할 수 있다.

②유급해외연수기간의 보수는 별표 2 의 월급액과 별표 7 의 예능

연구보조비를 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제 1항에 의한 해외연수 단원은 유급해외 연수기간의 3배의 기간을 예술단체에 근무하여야 한다.

④제 3항에 의한 의무근무기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외연수기간 지급된 보수전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은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구의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1981년 6월 9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909 호

서울특별시구의 사무분장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구의 사무분장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1 조제 2 항제 2 호 각목 다음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지지도청소 및 지하도청소원
임용내선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1981년 6월 9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910 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2 조제 4 항중 '조급오봉의 한계와 직
명은'을 '및 직명은'으로 한다.

제 69 조의 제 2 항을 삭제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1.3.1부터 적용한다.

(별표16) 교 용 원 종 별 및 직 종 구 분 표

종 별	직	종
1	종	타지원, 차드사, 민원보조원, 대장쟁리원, 의무원, 간호보조원, 물리치료사, 복수교사, 시험원, 지도원, 사육원, 수위, 운전원, 교원원, 사진사, 조명원, 영화기사, 무대수, 목공, 병난방공, 자동차공, 기계공, 수리공, 전공, 통신원, 통신수, 보안수, 선로수, 수도기수, 조절수, 수도정비공, 기타 이와 유사직렬
2	종	전달부, 감시원, 경비원, 안내원, 상담원, 교도원, 매표원, 조사원, 보조수, 이·미용사, 재봉사, 세탁부, 취사부, 방역기사, 보모, 사장원정, 화부, 직공, 청부, 청소원, 관리원, 여객수, 정리수, 수로원, 잡무원, 기타 이와 유사직렬
경 노 무 사 환 교 용 원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198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911호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0 조제 2 항제 2 호중 '자' '차'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 교통안전지도 제공
- 차. 소용장애물(공사장 및 보도상의 삼상인, 방치물, 차광막, 전열대등)

이 대한 지도단속

제 4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3 조 (통신과) ①통신과에 통신관리제, 유선제, 무선제 및 지명제를 두고 제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②통신과의 제별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신관리제

- 가. 과내직원복무 및 인사
- 나. 통신보안업무
- 다. 통신예산집행
- 라. 통신기자재 수급관리
- 마. 과내 다문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유선제

- 가. 각종 유선통신업무에 관한

계 반제외 수립시행

- 나. 각종 유선망 관리운영
- 다. 각종 유선망 구성운영
- 라. 유선장비 시설관리운영
- 마. 유선장비 정비유지
- 바. 교환원 교양 및 지도감독

3. 무선계

- 가. 각종 무선통신업무에 관한 계 반제외 수립시행
- 나. 각종 무선망 관리운영
- 다. 작전 무선망 구성운영
- 라. 무선장비 시설관리운영
- 마. 무선장비 정비유지
- 바. 송신소, 수리공작소 운영

4. 지형계

- 가. 각종 범죄신고 접수 유무선 지형
- 나. 수사업무에 관한 지형
- 다. 정보업무에 관한 지형
- 라. 경비업무에 관한 지형
- 마. 기타 일반경찰행정에 관한 지형업무

제 45 조제 2 항제 2 호중 '바'항을 삭제하고 3 호에 '라'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특별지사 또는 상해지사 사법수사

제 58 조제 1 항중 '건축관리계'를 '건축기획계'로 '건축관리지장'을 '건축기획계장'으로 하고, 제 2 항중 제 1 호 및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행정계

- 가. 건축행정기 종합조정
- 나. 건축행정기본운영계획 및 심사
- 다. 건축상 제도운영
- 라. 건축에 관련된 소송처리
- 마. 건축사의 지도감독과 시설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국내다른과 및 국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건축기획계

- 가. 건축관계법규 정비
- 나. 건축물 통제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 다.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 5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계획계

- 가.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건축계획 (외관, 배전, 재료등)에 관한 기술지도
- 다. 주요지역 도시선계에 관한 업무
- 라. 기타 국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건축지도 1, 2 계

- 가.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 나. 건축물의 구조 및 기술지도
- 다. 건축지도 및 건축기술용역
- 라. 건축물의 안전 및 방재에

관한사항

마. 위법, 위험건축물 조치에 관한 사항

바. 점점순환반 운영

사. 기존건축물 사후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제 72 조제 2 항제 3 호승 '가' 목의 '행정적인 관리' 물 총괄로 한다.

부 칙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1981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912 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공급조례
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본문을 제 2 조제 2 항으로 하고 제 2 조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조례 제 3 조제 2 항 단서에 의한 시설분담금의 분할납부는 다음과 같

이 할수 있다.

(1)신규로 건설하는 주택은 가스 시설 준공기일까지

(2)기존 주택은 가스공급 개시후 10 개월까지

부 칙

이 규칙은 1981년 6월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 206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66호(73.4.30)로 시설결성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79.12.10)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1. 6.

서울특별시장

<p>가. 사업시행지 : 종로구평창동216-1,217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교사증축 다. 사업의규모및면적 1) 토지면적 : 17,620㎡ (5,330 평) 2) 건축면적 가. 기존면적 : 7,084.449㎡ (2,146 평) 나. 증축면적 : 3,711.65㎡ (1,124 평) 5,6층 수직증축</p>	<p>다) 연면적 : 10,796.099㎡ (3,270 평) 라. 사업시행자주소·성명 : 중구정동 32번지 학교법인 이화학원 대 표이사 신봉조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15일내 준공년월일 : 1982.5.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의 소재 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 리명세</p>
---	--

학교명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서울예술 고등학교	종로구평창동 216-1	전	14,777㎡ (4,470평)	학교법인 이화학원	없음
	종로구평창동217	대	2,843㎡ (860평)		없음

<p>사. 토지또는 건물의소유자와 토지수 용법 제 4조 3항규정에 의한 관계 인 주소 성명 : 상 동 아. 공사실제도면 :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09 호 도시계획사업 (고속철도) 실시계획 인가정정고시 1. 건설부 고시 제 203호(75.12.20) 및 건설부 고시제 232호(77.12.1) 에 의거 고시된 지하철 2호선건설공사의</p>	<p>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서울특별시고시 제 150 호 (79.4.10)의 토지조서내용중 별 첨과같이 착오된부분을 정정하고 동 법제 26 조와 건설부고시제 463 호 (79.12.10)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고시함 2. 관계도서는 지하철건설본부 기획 조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6. 9 서울특별시장</p>
--	--

토지조사 (당초 및 정정)

당		초		정		정			
동명	지번	지목(면적)	주소	성명	동명	지번	지목(면적)	주소	성명
강동	2-42	전 43.6	동대문구계기1동	전원중	강동구	327	임 192.4	동대문구성암리동	전원중
강일동	1-1		122-741	강일동				235-4 마루APT	
								5동 1001	
	2-30	전 83.5	성동구홍익동55	김동원		309	전 276	중구필동2가116-4	박중남
	2-33	전 72.4	성동구중앙동	박병주		323	전 239	구로구계봉동360-6	신우재
	229-3	잡 90.0	종로구인사동99	이주봉		229-3	잡 165	중구장충동2가	지순홍
								193-116	
	197-1	전 102	강일동95	송소봉		197-1	전 337	동대문구건목동	이복훈
								171-53	
								성동구행당동12-9	박종이
	544-1		강남구청담동시영	전중수		64-1		강남구청담동시영	전중수
		62.4	주택 10단지 57호				258	주택 10-57	
	5-57		강남구삼성동3	전재민		419		종로구창성동140	최은배
	5-63	26.4				420		강남구삼성동3	정동환
	5-56								
	1-24-1	46.7	종로구연진동323	주부덕		270	잡 187.4	종로구연진동323	주부덕
	1-27					277			
	1-24-1	40.60		주부덕		269			주부덕
	1-27						187.4		
	1-24-1	94.8	종로구인남동65-3	김일원		272			주부덕
							313.		
	2-13	전 28.2	성북구성북동	이상천		271	전 101	성북구중곡동	김형래
	2-28		184-71	이서애		292		242-4	
	채비지	전 62.7	채비지	서복별시		채비지		985.4	종로구연지동136
	1-1					1-1			학파인
						(내)			정신의원

◎서울특별시고시제 210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 1. 서울특별시고시 제102호(77.4.11)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된 성북구돈암동 173의 29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463 호 (79.12.10)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하고
-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1. 6. 9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성북구돈암동 173의 29 필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학교법인 성신학원 특별교실 신축 (중학교용)

다. 규모및면적 : 건물 1 동 , 바닥면적 438㎡

라. 시행자주소 , 성명 : 성북구돈암동 173-1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 이숙중

마. 공사기간

착공일 : 허가일로부터 1 개월 이내

준공예정일 : 1982.6.30

바. 위치및계획경면도 : 별첨 (도면생략)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함

◎서울특별시고시제 211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78호(77.10.29)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된 성북구돈암동 173 번지의 29 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를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하고
-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1. 6. 9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자 : 성북구돈암동 173의 29 필지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다. 사업의명칭 : 성신여자사범대학교 교지 조성공사

라. 사업시행면적 및 변경

당초 : 69,796㎡ (21,113 평)

변경 : 69,796㎡ (21,113 평)

구조변경

- 다.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시
성북구돈암동 173 의 1 학교법인 성
신학원 이사장 이숙종
-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공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1 개월
이내
당초준공예정일 : 81
변경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 년
6 월
- 사. 위치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
면생략)
- 가. 공사설계도면 : 별첨 (도면생략)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212 호

도시계획사업 (지하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71호(81.3.14)로
도시계획시설 (지하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성동구마장동 480 의 7
509-1번지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도시계획법 제
26 조에 의거 사업실시인가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
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일

니다.

1981. 6. 11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시행지 : 성동구마장동 480의
7-509 의 1
2. 사업의종류및병칭 : 도시계획사업
(지하도로)
3. 사업의규모 : (폭 6미터, 길이 10
미터, 면적 60 평방미터)
4. 사업의시행자 : 성동구청장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공예정일 : 1981.6.
준공예정일 : 1981.10.31
6.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 별첨생략
7.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제 213 호

도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54호로 도시
계획시설 (도로) 결정된 지역에 대
하여 도시계획법 제 3 조와 건설부
도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
한 위임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이를 고
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1. 6. 11
서울특별시청

○ 노선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전장	기 점	종 점	비고
신설	소로	2		8	200	내곡동 190	내곡동 153	
"	"	3	1	5	170	내곡동 1-231	내곡동 1-145	
"	"	3	2	6	320	내곡동 1-1208	내곡동 1-1213	
"	"	3	3	6	90	내곡동 1-1213	내곡동 1-1216	
"	"	3	4	6	140	내곡동 1-1217	내곡동산 13-196	
"	"	2		8	360	우면동 295-1	우면동 646	
"	"	2		8	490	우면동 148	우면동 205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을.

◎ 서울특별시고시제 214 호

도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공고 제 124호(81.4.11)로 공람공고한바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지하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영등포 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1. 6

서울특별시청

- 1) 사업시행의위탁: 영등포구영등포3가 (영등포역앞~영등포시장로타리간)
-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영등포 3가지하도 (상가점용) 시설공사
- 3) 사업의규모: 지하도 B=18.3 m L=240 m A=6,124㎡ (1,853평) (통로면적: 660평, 상가면적: 618평, 출입구면적: 110평, 부대시설: 465평)
- 4) 사업의시행자: 서울특별시청
-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81.6.1~82.12.31
- 6) 사용및수용갈토지: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제 215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정정고시

1. 건설누고시 제 8 호 (76.1.21) 및

서울시고시 제 14 호 (76.1.22) 서울
시고시 제 371 호 (80.11.6) 로 고
시된 반포대교 (잠수교 2층) 공사 및
접속도로 (강변 3 트) 이설공사의 도
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고시된 서울특별시고시 제 412
호 (80.12.19) 의 토지조서 내용중
별첨과 같이 착오된 부분을 정정
하고 동법 제 26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용산구 건설관리과
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
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
다.

1981. 6

서울특별시장

토지조서 (고시) 정정내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지번및면적	보광동 36-13 대 145 평 중학동 18-8 장강재	보광동 36-14 대 482 평 중학동 18-8 장강재
지번,면적,소유자	보광동 37-1 대 63 평 보광동 3-1 박성관	보광동 37-6 대 82 평 보광동 3-1 김성실
"	보광동 38-1 대 42 평 보광동 3-1 박성관	보광동 38-5 대 58 평 보광동 3-1 김성실
"	보광동 39-1 전 22 평 보광동 80-21 삼성여객	보광동 39-6 대 68 평 보광동 80-21 삼성여객
"	보광동 40-1 전 16 평 보광동 80-21 삼성여객	보광동 40-5 대 47 평 보광동 80-21 삼성여객
"	보광동 70-27 전 8 평 보광동 75-1 장영환	보광동 70-30 전 19 평 보광동 75-1 장영환
"	보광동 70-4 전 176 평 보광동 75-1 장영환	보광동 70-31 전 558 평 보광동 75-1 장영환
"	보광동 70-8 전 97 평 보광동 75-1 장영환	보광동 70-32 전 65 평 보광동 75-1 장영환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누락		보광동 70-33 건 235㎡ 보광동 75-1 장영환
·		보광동 85-2 전 269㎡ 보광동 207-4 석연순
·		보광동 87-12 대 395㎡ 보광동 87 조성행외 3
·		보광동 129-6 대 15㎡ 보광동 129 최인환
·		보광동 129-7 대 79㎡ 보광동 129 최인환
·		보광동 132-17 대 23㎡ 후암동 345-1 이희재
지번및면적	보광동 132-14 대 3평 보광동 132-14 하정사	보광동 132-18 대 32㎡ 종로 3가 11 박정렬
누락		보광동 137-7 대 14㎡ 종로 3가 11 박정렬
지번및면적	보광동 137-5 대 5평 보광동 137-2 서순남	보광동 137-8 대 55㎡ 보광동 137-2 서순남
누락		보광동 144-6 대 21㎡ 영등포 2가 295 이유순
·		보광동 149-7 대 18㎡ 남영동 61 김고식
·		보광동 147-30 대 27㎡ 오산중학교
·		보광동 29-5 대 123㎡ 중학동 18-8 장강재
지번및면적	한남동 542-13 대 60평 중학동 18-8 장강재	한남동 540-14 대 136㎡ 중학동 18-8 장강재
·		한남동 542-15 대 51㎡ 중학동 18-8 장강재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지번및면적	한남동 542-3 대 2 평 중학동 18-8 장강제	한남동 542-16 대 6 평 중학동 18-8 장강제
"	보광동 83-5 구 45 평 서울시	보광동 83-9 구 127 평 서울특별시
"	보광동 86-1 전 8 평 국유지	보광동 86-6 전 2 평 국유지
"	보광동 86-4 전 2 평 국유지	보광동 86-7 전 6 평 국유지
"	보광동 130-3 대 13 평 서울시	보광동 130-6 대 79 평 서울특별시
"	보광동 132-7 대 1 평 서울시	보광동 132-15 대 12 평 서울특별시
"	보광동 132-3 대 21 평 서울시	보광동 132-16 대 49 평 서울특별시
누락		보광동 146-8 대 8 평 서울특별시
"		보광동 87-5 대 2 평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216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526 호(78.10.6) 및 동고시 제 576 호(78.11.3)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관악구 봉천동산 681-19외 19필지에 대하여 도수계획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제 25조 건설부 고시제 463

호(79.12.10)에 의거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을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6.

서울특별시장

<p>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61-19의 19 필지</p> <p>나. 사업의종류및 : 도시계획사업(학교) 명칭 : 신봉중학교</p> <p>다. 사업규모및면적 : 20,115.7㎡(6,085평)</p> <p>라. 사업시행자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봉곡로구여의도동 1-16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교육감</p> <p>마. 사업의착수준공예정일 :</p>	<p>착수 : 시행허가일로부터 30일내</p> <p>준공 : 착수일로부터 1년내</p> <p>박.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p> <p>사. 토지의소유자와 수용법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재인 주소 성명 : 다음</p> <p>따. 시행허가신청도시 : 별첨(생략) 끝</p>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주 소	성 명	
신 봉 중학교	관악구 봉천동	676-1	답	50	평중 46			
		676-2	"	327	평중 75	용산구한남동 726-166	이 수 회 (가동기)	
		3	"	81	평중 1	근저당실점 한국주택은행봉천동지점		
		4	"	120	평중 77			
		5	"	100	평중 78			
		677	대	1,544	평중 1,210	용산구한남동 726-166	이 수 회 (가동기)	
		677-1	"		410	평	용산구한남동 726-166	이 수 회 (가동기)
		677-2	"		132	평		
		680	전	440	평중 30			
		680-1	대	113	평중 110	용산구한남동 726-166	이 수 회 (가동기)	
680-6	전		31	평				
680-8	전		69	평중 63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주소	성명
신봉중학교	관악구 봉천동	681	대	342 평	용산구한남동 726-166	이수희 (가등기)
		681-1	대	86 평	용산구한남동 726-166	이수희 (가등기)
		682	"	260 평	용산구한남동 726-166	이수희 (가등기)
		682-1	"	1,992 평 중 1,628 평	"	"
		683	"	418 평중 373 평	"	"
		683-2	"	382 평중 284 평	"	"
		산 133 산 125	임 임	5,400 평중 698 평 180 평		
계			6,085 평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신봉중학교	관악구 봉천동	676-1	답	50 평중 46 평	구로구개봉동 403-101	김정자	과 동 이수희 (가등기) 근저당실정 한국주택은행 봉천동지점
		676-2	대	327 평중 75 평	용산구한남동 726-166	이상범	
		676-3	답	81 평중 1 평	관악구봉천동 676-3	김도형	
		676-4	"	100 평중 77 평	영등포구영등포동 6가	조경희	
		676-5	"	100 평중 78 평	종로구내수동 67-2	정원식	
						과 동 이수희 (가등기)	

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신봉중학교	관악구 봉선동	677-1	답	401 평	종로구내수동 67-2	정원식	과 동	
			답					이수희 (가등기)
		677-2	//	132 평	동작구동작동 47-17	오영환		
		680	답	440 평중	성동구중목동 147-26	박창근		
				30 평				
		680-1	대	113 평중	용산구한남동 726-166	이성범		과 동
				100 평				이수희 (가등기)
		680-6	전	31 평	마포구창전동 324-2	신흥철		
		680-8	전	69 평중	"	"		
				63 평				
		681	대	342 평	용산구한남동 726-166	이성범		과 동
								이수희 (가등기)
		681-1	대	86 평	용산구한남동 726-166	이성범		과 동
								이수희 (가등기)
		682	대	260 평	"	"		"
682-1	대	1,992 평중	"	"		"		
		1,628 평						
683	대	418 평중	"	"		"		
		373 평						
686-2	대	382 평중	"	"		"		
		284 평						
		산 133	입	5,400 평중	용산구한강로 2가 181			
				688 평	미원산업주식회사			
		산 25	입	180 평	용산구한남동 726-166	이성범		
		계		6-085 평				

<p>서울특별시고시제 217 호</p> <p>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인가고시</p> <p>1. 서울특별시고시제 139 호(81.4.22)로 지적 승인된 도봉구 방학동 산 37-1 일대의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 인가를 도시계획법제 25 조 제 1항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79.12.10)규정에 의거 사업실시계획인가라고 고시한다.</p> <p>2. 관계도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각각 비치되며 토지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1.6.13 서울특별시 장</p>					<p>가. 사업시행지: 도봉구방학동 산 37-1 의 10 필지</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 방학중학교</p> <p>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16,793 (5,080 평)</p> <p>라. 사업인가자주소성명: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장</p>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p> <p>1) 착공예정일: 인가일로 부터 3 개월 이내</p> <p>2) 준공예정일: 82. 6. 30</p> <p>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의 권리 명세 (다음)</p> <p>사. 토지수용지이 토지수용법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다음)</p>				
<p>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p>									
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방학중학교	도봉구 방학동	산 37-1	임	13,202㎡ 11,561㎡	중구필동 2 가 124-5	김교현	성동구구의 동 253-43	이상원	
					동대문구답십리 동 267-8	김동식	도봉구번동 413-6	황보조	

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방학중학교	도봉구 방학동	632-9	임	1,650 평	도봉구방학동산 48-3	권도식	제한자동차주 식회사에근저당
		산40-5	//	5,488 평중 1,530 평	도봉구수유동 518	안화영	
		산41	//	3,967 평중 99 평	서대문구창천동 473 성북구동소문동4가217	안점업 박준수	
		산36-2	//	1,587 평중 28 평	종로구혜화동 8-1	김상용	
		313	건	808 평중 580 평	잠실4동장미아파트3동 1407호	이점길	
		313-4	//	269 평중 227 평	"	"	
		313-5	//	687 평중 552 평	"	"	
		341	//	279 평중 279 평	도봉구번동 450	김윤진	
					도봉구번동 460-33 성북구견릉동 132-86	김선희 김상금	
			도로		49 평		
계				16,793 평 (5,080 평)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방학중학교	도봉구 방학동	산37-1	임	13,202 평중 11,561 평	없 음		
		632-9	//	1,650 평	제한자동차주식회사에근저당		
		산40-5	//	5,488 평중 1,530 평	없 음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이외의권리명세
		산 41	임	3,967 평중 99 평	없음
		산 36-2	//	1,587 평중 28 평	//
		313	전	808 평중 580 평	//
		313-4	//	269 평중 227 평	//
		313-5	//	687 평중 552 평	//
		341	//	279 평중 279 평	//
		도로		49 평	//
계				16,793 평 (5,080 평)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58 호

KS 표시접지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 KS (한국공업규격) 표시
접지처분하였기 동법시행규칙제 21 조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1. 6. 9

서울특별시장

허가번호 제 2223 호

허가일자 80.10.13

제조업체명 용원산업

대표자 임실근

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평동 2 가 9

품명 (종류) 도어클로저 (표준형)

규격번호 KSF 4505

처분기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처분사유 KS 규격미달

◎서울특별시공고제 159 호

KS 표시허가취소공고

공업표준화법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 KS (한국공업규격) 표시허
가취소처분하였기 동법시행규칙제 21 조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1. 6. 9

서울특별시장

<p>허가번호 제 1736 호 허가일자 79.1.31 제조업체명 파이도금속공업㈜ 대표자 권오광 소재지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65 품명및종류 화이트메탈 7 종 규격번호 KSD 6003 처분사유 KS 규격미달 (2 회 이상 표시점지)</p>	<p>지구 제 7 획지 재개발사업 나. 시행위치 : 마포구도화동 43-1 번 지외 6 필지 다. 시행면적 : 5,447.3 ㎡ 라. 대지면적 : 4,302.5 ㎡ 마. 공공용지부담면적 : 1,144.8 ㎡ 바. 건축계획 (규모 및 용도는 건축허가시그 확정함) ○ 건축면적 : 1,699.15 (건폐율 : 39.5%) ○ 연면적 : 34,974.44㎡ (용적율 : 668.7%) ○ 주용도 :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 ○ 층 수 : 지상 15층, 지하 4층 사. 시행자 : 마포로주변구역 제 1 지구 구 제 7 획지 재개발조합 아. 시행기간 : 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가. 공람기간 : 81. 6. 10 - 81. 7. 9 차. 공람장소 1) 서울특별시 건축국 재개발 과 (720-4627) 2) 마포구도화동 43-1 (33-9053)</p>
<p>◎서울특별시공고제 161호</p> <p>마포로주변역제 1 지구제 7 획지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p> <p>건설부고시제 345 호 (79.9.21) 및 동부고시 제 146 호 (80.5.19) 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된 마포 로주변구역 제 1 지구 제 7 획지 토 지소유자로부터 재개발사업 시행인 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개발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람에 공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1.6.10 서울특별시장</p> <p>가. 사업명칭 : 마포로주변구역 제 1</p>	

③서울특별시공고제 16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230호(1980.6.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된 정릉동 655-23 주변 가각점 비 공사구간내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제 2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2. 관계모서는 성북구청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

1981.

서울특별시

가. 공 랫 개 요

가. 사업장의위치 : 성북구 정릉동 655-23

나. 사업의종류와명칭 : 정릉동 655-23 주변 가각점리공사

다. 사업의규모 : B = 7 m L = 50m

라. 사업의시행자 : 서울특별시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81.8.30

바. 사용또는 수용할토지 : 다음

사.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의 토지 수용법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다음

공 사 토 지 가 격 조 서

19 . . . 사점

번호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	산술평균치	사 점		소 유 자		비 고
					단가	금액	주 소	성명	
1	정릉동 655-27	대	63㎡				종로구상계동 147-35	손중희	
2	정릉동 655-21	대	119㎡				종로구이화동 9-12	오상민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64 호

도영구역제 12지구재개발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 367 호 (73.9.6) 로
구역지정되고, 동고시 제 463 호 (80.
12.31) 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된
도영구역제 12지구 토지소유자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제출
되어 도시재개발법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다음과 같이 공람시킵니다.

1981. 6. 13.

서울특별시 장

- 가. 사업명칭 : 도영구역제 12지구 재
개발사업
- 나. 시행위치 : 종로구당주동 100번지
외 72 필지
- 다. 시행면적 : 4,979.7 ㎡
- 라. 대지면적 : 3,685.2 ㎡
- 마. 공공용지부담면적 : 1,294.5 ㎡
- 바. 건축계획 (규모 및 용도는 건
축허가서로 확정함)
 - 건축면적 : 1,599.86 ㎡
(건폐율 43.41%)
 - 연 면 적 : 24,189.628 ㎡
(용적율 545%)

- 수 용 도 : 업무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층 수 : 지상 10, 지하 3,
옥탑 2

사. 시행자 : 도영구역제 12지구재개발
조합

야. 시행기간 : 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자. 공람기간 : 81.6.13-81.7.12

차. 공람장소

- 1) 서울특별시건축국 재개발 1과
(720-4627)
- 2) 서울특별시종로구당주동 95-1
번지 (조합사무실 720-7233)

사 령

◎ 1981.6.11 발령호수 : 222

하수시설과 안전중
지방전기기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장

◎ 1981.6.12 발령호수 : 223

중 구 용 탁 준
지방토목기과

중구 도시적비국장

지방토목기점

제 28 제 842 호	시 보	1981.6.9
종합운동장건설본부 지방건축기과	신 언 편 © 1981.6.15	발행호수 : 221
종합운동장건설본부공무과장 지방건축기정		대 구 시 지방건축기사보 김 강 섭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강서구 근무를 명함.
발행호수 : 224 지 방 토 목 기 과 시 보 김 영 결		서 울 특 별 시 장
도시가스기입소 공 무 과 장 11 호분 서 울 특 별 시 장		